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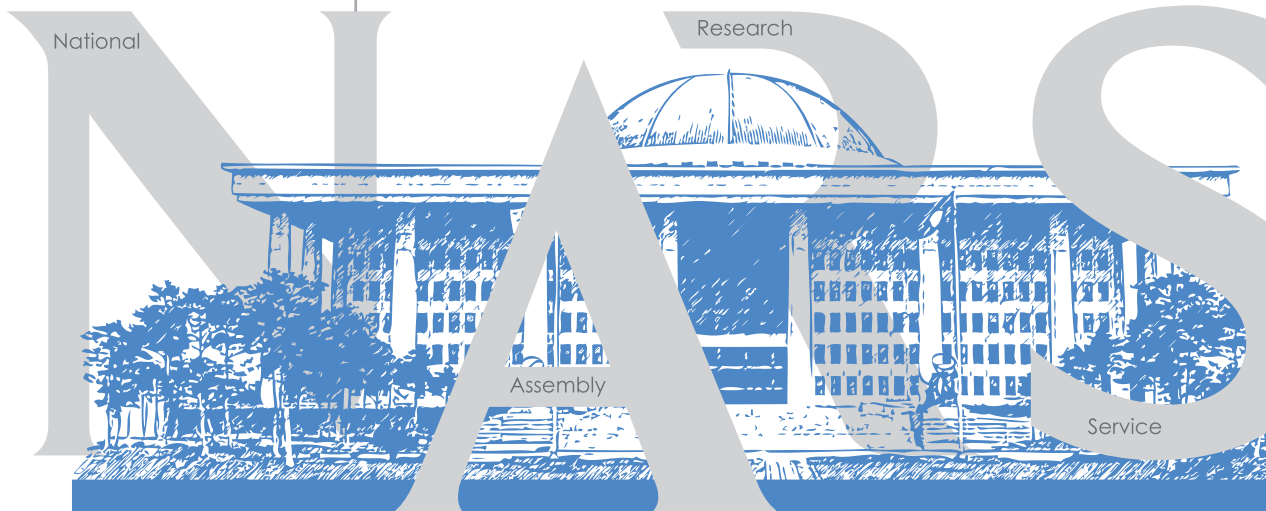


입법·정책보고서

2020. 10.

제59호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종규(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2020. 10. 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입법·정책보고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0.10. 8.)되었습니다.

요 약

리쇼어링(reshoring)은 원가절감과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진출 등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진출했던 기업이 현지의 임금상승과 경제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과도한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자국 내 소비 위축, 실업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기업의 회귀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체제 확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스템의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패키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주요경과, 정책내용, 실적 등을 살펴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내용과 건의 및 애로사항을 통해 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지원정책 추진배경, 정책의 특징, 리쇼어링 결정요인 등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해외 생산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만 리쇼어링 기업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조건 없이 해외인소싱이나 해외아웃소싱의 복귀를 통해 자국 내 생산증가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다. 둘째, 해외진출기업 실태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사주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실시여부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셋째, 지원체계의 경직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협상을 통해 지역실정이나 특색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높은 인건비와 전문인력 구인난 등 인력문제가 리쇼어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생산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의 리쇼어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섯째, 세제감면 실적이 저조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국내복귀기업’에 해당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경영상황, 국내복귀 의향, 선호 지원정책 등의 구체적 실태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정례화하고, 그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이나 특색에 맞는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해당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복귀기업’ 대상 업종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행

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산업 이외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력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도 리쇼어링 저해요인으로 꼽고 있는 바, 일본의 로봇산업,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같은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인력사용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리쇼어링 기업 지원 대상을 개성공단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리쇼어링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대기업은 기업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제감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정상화되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7년의 감면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개선사항으로 실적 위주의 업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한계기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 례

□ 요약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3
가. 연구범위	3
나. 연구방법	4

II.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 / 6

1. 정부 지원정책 현황	6
가. 지원정책 배경	6
나. 지원정책 주요경과	6
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11
라.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	13
2.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현황	18
가. 지원정책 주요내용	18
나. 건의 및 애로사항	19

III.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 / 22

1. 미국	22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22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23

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정책 동향	25
라. 지원정책 주요성과	27
2. 일본	30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30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31
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정책 동향	33
라. 지원정책 주요성과	34
3. 대만	36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36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36
다. 지원정책 주요성과	39
4. 독일	41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41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42
다. 지원정책 주요성과	43
5. 소결	45

IV.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7

1. 리쇼어링 대상기업 확대	47
가. 문제점 및 필요성	47
나. 개선방안	49
2.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50
가. 문제점 및 필요성	50
나. 개선방안	51
3.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52

가. 문제점 및 필요성	52
나. 개선방안	53
4. 인력문제	55
가. 문제점 및 필요성	55
나. 개선방안	56
5. 대기업 리쇼어링 촉진 방안	61
가. 문제점 및 필요성	61
나. 개선방안	61
6. 세계감면 기간확대	64
가. 문제점 및 필요성	64
나. 개선방안	65
7. 그 밖의 개선사항	66
가. 업적주의 및 실적주의 지양	66
나. 미래첨단 산업정책과 리쇼어링 지원정책과의 연계	67

V. 결론 / 68

참고문헌 / 71

부록 / 75

표 차례

[표 1] 국내복귀기업 유형	3
[표 2] 주요국의 리쇼어링 개념	4
[표 3] 코로나19 사태 이후 리쇼어링 기업 추가 지원정책 내용	9
[표 4]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주요경과 및 내용	10
[표 5] 기업유형별 지원 사항	13
[표 6]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14
[표 7] 국내복귀기업 진출 국가별 현황	14
[표 8] 국내복귀기업 업종별 현황	14
[표 9] 국내복귀기업 지역별 현황	15
[표 10] 기업규모별 현황	15
[표 11]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및 관세 감면실적(2015~2019년)	16
[표 12]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실적(2015~2019년)	16
[표 13] 국내복귀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실적(2015~2019년)	16
[표 14] 국내복귀기업 지원 실적(2015~2019년)	17
[표 15] 지방자치단체 건의 및 애로사항	21
[표 16]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 관련 법령 내용	24
[표 17] 미국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조업 피해 현황	25
[표 18]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공급망의 타국 전환 의사를 밝힌 분야	26
[표 19] 미국의 리쇼어링 외부 및 내부 요인	28
[표 20]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 국내 복귀 사례	29
[표 21] 일본의 산업 활성화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현황	30
[표 22]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법」 관련 지원내용	33
[표 23] 일본기업의 유턴 및 투자 확충사례	35

[표 24] 대만의 리쇼어링 기업 우대정책	38
[표 25] 대만의 리쇼어링 투자금액 및 유치건수	40
[표 26]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특징	46
[표 27] 리쇼어링 종류에 따른 경제효과	48
[표 28]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54
[표 29] 한·일·독 제조업 종업원 월평균 임금 현황	57
[표 30] 한·일 산업용 로봇 설치 현황	58
[표 31] 개성공단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보수 및 사회보험료	59
[표 32]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남·북 근로자 현황	60
[표 33]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60
[표 34] 대기업 지원 확대 방안 내용	62
[표 35]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조세감면 지원요건 내용	62
[표 36]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지원기간	65
[표 37]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실적	65

그림 차례

[그림 1] 미국의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일자리 누적 현황	27
[그림 2] 미국의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별 일자리 누적 현황	27
[그림 3]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 정책 구조	32
[그림 4] 인터스트리 3.0과 인터스트리 4.0 생산체제 비교	43
[그림 5] 국내복귀기업 신청절차	53
[그림 6] 국내복귀 의향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55
[그림 7] 국내복귀에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	56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리쇼어링(reshoring)은 원가절감과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진출 등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진출했던 기업이 현지의 임금상승과 경제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말함
-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과도한 오프쇼어링(offshoring)¹⁾으로 자국 내 소비 위축, 실업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기업의 회귀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미국 제조업 부흥(renaissance of the U.S. manufacture)’을 통하여 전반적인 제조업 강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의 고이즈미 내각은 ‘잃어버린 10년’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차원에서, 그 이후 아베 내각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엔화 강세로 위축된 제조업 활성화 차원에서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함
- 우리나라도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경기의 활성화, 자본유입, 국내 생산기반 확충, 고용창출, 산업공동화의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반영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이

1)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능을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함

라 함)을 제정(2013.8.6.)함

- 미·일·독 등 해외 주요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지원을 규정하여 운용하는 국가는 없고, 세제인하 등 전반적인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2020년 2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과 2020년 6월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유턴 촉진 및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이 발표에는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가 포함된 ‘종합 패키지’ 도입과 첨단산업 R&D 센터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이 담겨져 있음
- 해외진출기업들도 국가 간 교역과 인력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해외공장이 코로나 19 사태로 ‘셧다운’ 되는 등 취약점이 부각되면서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 밖에도 기업들은 임금상승, 물류비용 증가,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부족 및 협력저하 등의 문제로 전략적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선택함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심이 높아진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 우리나라는 리쇼어링의 개념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복귀기업²⁾’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리쇼어링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범위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한하여 살펴봄³⁾

[표 1] 국내복귀기업 유형

구분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청산 또는 양도	신설
	생산량 축소 또는 유지	신설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청산 또는 양도	신·증설
	생산량 축소	신·증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대외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복귀기업지원 종합가이드』, 2020, p.5.

- 이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외국에 투자했던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산량 조정, 투자 계획 변경 등도 리쇼어링에 해당되는 등 개념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게 사용하여 국내 정책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책의 개

- 2)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말함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2조(정의)제4호)
- 3) 각 국에서 사용하는 리쇼어링의 용어를 보면, 우리나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국내복귀’, 일본에서는 ‘국내회귀’, 그 외 미국·유럽 등에서는 ‘리쇼어링’이란 용어를 사용함. 이 보고서에서는 ‘리쇼어링’으로 통일해서 표기하고 다만, 법률 내용을 인용할 때는 ‘국내복귀’를, 정부 보도자료나 문헌에서 ‘유턴’으로 표기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함

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자료로 활용함

- 주요국들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범위도 우리나라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범위보다 넓은

[표 2] 주요국의 리쇼어링 개념

유형		한국	미국	유럽연합
국내복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국내 신·증설	○	○	○
생산량 조정	해외자사공장→국내자사공장	△	○	○
해외아웃소싱 전환	해외아웃소싱→국내아웃소싱	-	○	○
	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	-	○	○
투자계획 변경	해외투자계획을 국내투자로 변경	-	○	○

주: ‘△’ 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감축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해당됨
 자료: 이수영외,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31.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이러한 리쇼어링 범위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내용 및 성과 등을 주요국들의 정책과 단순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음

나. 연구방법

-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의 주요 지원정책 내용을 검토함
- 법인세 및 관세 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상업종 확대 등을 위하여 2019년 11월에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을 개정하였고,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2019년 8월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있었음

-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20.2.20.)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0.6.1.)에서 발표한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유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파악함
 -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 내용과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음
-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 논문과 코트라 무역관 자료,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관련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정리함
- 이 밖에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참조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 일시 및 발표자: 2019년 6월 17일(월) 박병국 팀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 일시 및 발표자: 2020년 6월 4일(목), 문종철 연구위원(산업연구원)

II.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

1. 정부 지원정책 현황

가. 지원정책 배경

-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상승, 고임금 등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생존 전략을 선택함
-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국내생산 시 관세혜택과 더불어 해외 현지 임금상승, 노사관계 어려움, 세율인상 등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의 사유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⁴⁾
- 이에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이 침체된 국내경기의 활성화, 자본유입, 국내 생산기반 확충, 고용창출, 산업공동화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영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함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2013년 8월 6일 제정되어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 중임

나. 지원정책 주요경과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실시한 지원정책의 주요경과를 보면, 정부는 2013년 12월 7일 동법 시행과 함께 세제·보조금 지원 강화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함

4) 전정희, 「U턴 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정희의원실, 2013, p.15.

- 2017년에는 산업경쟁력 회복 및 산업의 새로운 활력 제공을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에 유턴기업 유치사업이 포함됨
- 2018년 11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현장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인센티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 을 발표함
 - (대상 확대) 지원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생산제품 범위를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확대하였으며,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기준을 50%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함
 - (인센티브 강화) 세제 부문에서는 법인세 및 관세 감면대상에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전환함
 - 또한 입지·설비 보조금 요건인 상시고용 30인을 20인으로 완화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제시함
 - 이 밖에 지원체계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스마트 공장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함
- 2019년에는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선정됨
 - 중국 부품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울산 이화산업단지에 새 공장을 건설함
- 2019년 11월 19일에는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 의 후속 조치가 포함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국내복귀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 공장의 매입, 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무역전략조정회의(’20.2.20.)에서 ‘코로나 바이

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유턴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포함시킴

-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용함
 - (입지)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을 완화(매출액 중 수출입액 비중 축소: 30% →20%)하고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함
 - (금융) 4.5조 원 규모 중소기업 유턴기업 등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함
 - (R&D)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시 유턴기업을 우대지원하기로 함
 - (인력)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지정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기로 함
 - (컨설팅) 컨설팅 지원 경비를 최대 1만 불에서 2만 불로 상향기로 함
 - (협력형 유턴) 유턴 결정에 최대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하고 및 패키지로 지원기로 함
- 2020년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하면서 주요내용으로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함
- (세제지원)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서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기로 함
 - (입지지원)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산단 입주 시 분양 우선권 부여 등 입지지원을 강화기로 함
 - (입지·시설 투자 보조금) 입지·시설 투자 보조금을 현행 100억 원 한도에서 비수도권지역 200억 원, 수도권 지역 150억 원(첨단산업)으로 확대기로 함
 -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 강화) 스마트공장 심사 시 우선 선정하

고 로봇보급사업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함

-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 전략)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 유턴기업을 인정해 R&D 센터가 포함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 기준을 다양화하기로 함
- 이 밖에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상향(최대 1만 불→2만 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함
- 2020년 7월 8일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서는 비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비율 확대, 스마트화와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강화,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 유턴 기업 입주 허용 등의 지원책을 발표함

[표 3] 코로나19 사태 이후 리쇼어링 기업 추가 지원정책 내용

구분	현행	추가 또는 개선사항
세제	·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 시 세제 지원	· 국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
	·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 해외사업장 감축량 요건 폐지→생산 감축량에 비례하여 감면
입지	· 산업단지 우선 입주 · 국·공유 재산 사용 특례	·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 항만 배후단지에 유턴기업 입주 기준 완화 · 지방 단지형 외투 지역 입주 허용
입지·설비 투자보조금	· 기업 당 100억 원	·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 원 ·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 원
금융	· 초기 시설투자 자금 지원 ·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2020년 한시운영) · 수출촉진자금 대출 금리 우대	· 중소·중견 유턴기업 대상 시설투자지원 프로그램 신설 · 유턴 소부장기업 특별보증
스마트 공장	· 유턴기업 우선지원 · 로봇 보급사업 지원(3억 원 이내)	· 로봇 보급사업 지원확대(5억 원 이내) · 스마트화 및 로봇 자동화 지원 강화(7억+α)

자료: 정부 보도자료를 재정리함

□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주요정책 및 지원내용을 정리해 보며 [표 4]와 같음

[표 4]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주요경과 및 내용

일자	주요경과	주요 내용
'13.6.27.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 조세·보조금·입지·인력 등 종합지원
'17.6.19.	100대 국정과제 포함	· 국정과제 38번(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18.11.29.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	· 유턴기업 대상 확대: 대상업종 확대, 생산범위 확대 등 · 인센티브 강화: 세제감면(대기업포함), 고용보조금 확대, 입지지원 확대 등
'19.8.13.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19.8.28.	대기업(현대모비스) 1호 유턴 공장 기공식 개최	· 중국 부품공장 2곳 가동 중단 후 울산 이화산단에 새 공장 건설
'19.11.19.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통과	· 인정 범위의 업종 확대 등 ·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 등
'20.2.22.	코로나-19 이후 수출 지원 대책 (유턴기업 지원 패키지 확대)	· 국내 사업장 증설에 대한 세제감면 · 항만 배후단지 입지기준 완화 · 4.5조 규모 유턴기업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20.6.1.	하반기 경제 방향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 도입)	· 입지 시설 투자 보조금 확대 · 공장총량제 내 우선 배정 · 세제감면에 있어 해외생산량 50% 이상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감축량에 따른 감면 · 첨단산업 중심으로 R&D 센터 유치를 위한 요건의 다양화
'20.7.8.	소재부품장비 2.0전략	· 비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비율 확대 · 스마트화 및 자동화 로봇 지원 강화 ·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 입주 허용

자료: 정부 보도자료를 재정리함

다. 지원정책 주요내용⁵⁾

세제감면

- (법인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국내복귀를 실시하는 기업 (대·중견·중소)에 대해 최대 7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50~100%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동일제품 생산(세분류, 4단위), 해외사업장 50% 축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구분	청산/양도+국내사업장 신·증설, 창업 축소 + 국내사업장 신설·창업(수도권 외)	축소 + 국내사업장 신·증설, 창업 (과밀억제권역외 수도권)
감면	5년간 100% + 2년간 50%	3년간 100% + 2년간 50%

- (관세)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를 감면함

구분	청산/양도	부분축소
감면내용	100% 감면	50% 감면

투자보조금: 대·중견·중소, 입지설비 합산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함

- 적용지역: 수도권 외

입지	분양가지가의 9~50% (중견·중소)
설비	총 투자금액의 6~24% (대·중견·중소)

고용보조금: 중견·중소기업 대상

- (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⁶⁾ 및

5)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앞의 책, 2020.

6)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500명 이하,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300명 이하인 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년간 1인당 월 60만 원, 중견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함

□ 인력 지원

- (외국 전문인력) 특정활동사증(E-7) 발급(내국인 고용의 30%, 최대 30인 한도)
- (외국인 고용허가제) 해외사업장 직원이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 추가고용을 허용함

□ 입지 지원: 대·중견·중소기업 대상

-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 시 입주 우선권 부여
- (수도권 외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국·공유재산 수의 임대·매각, 장기임대(50년)

□ 보증·보험 지원

- (신용보증기금) 국내 사업장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 (보증한도) 적용 매출액의 1/3~1/2, (보증비율) 90%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 0.2%p 차감 보증료율을 적용함
- (기술보증기금) 국내 사업장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 기술력 우수기업 및 일반기업 대상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감면 우대 등
- (무역보험·보증지원)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및 한도 우대

□ 금융 지원

- (시설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시설투자 최대 80% 지원) 및 설비투자 붙임 프로그램(최저 1.5% 금리, 4.5조 원 규모)

- (수출촉진자금 금리 우대) 국내복귀기업에 최대 0.3%p 금리우대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산업기술 R&D 지원
 -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 시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하는 R&D 사업 신청 시 국내복귀기업에 가점 부여

[표 5] 기업유형별 지원 사항

기업 유형	복귀 지역	보조금		조세		인력지원			보증금 우대	입지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구조조정 컨설팅	금융	R&D
		입지	설비	법인세	관세	고용 창출 보조금	비자 (E7)	외국인 고용 (E-9)						
중소·중견 기업	비수도권	○	○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외)	×	×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내)	×	×	×	×	○	○	○	○	×	○	○	○	○
대기업	비수도권	×	○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외)	×	×	○	○	×	○	×	○	×	×	×	×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내)	×	×	×	×	×	○	×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앞의 책, 2020, p.9.

라.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

(1) 국내복귀기업 현황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의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4년도

에 20개사, 2015년도에 3개사, 2016년도에 12개사, 2017년도에 4개사, 2018년도에 9개사, 2019년도에 16개사, 2020년 8월 말 현재 16개사로 총 80개사임

[표 6]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단위: 개사)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월)	계
기업수	20	3	12	4	9	16	16	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진출했던 국가별 현황을 보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7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6개사, 필리핀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 인도네시아 1개사

[표 7] 국내복귀기업 진출 국가별 현황

(단위: 개사)

연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계
기업수	70	6	2	1	1	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전기·전자관련 기업이 16개사, 주얼리 13개사, 자동차 11개사, 금속 8개사, 기계 7개사, 신발 7개사, 화학 6개사, 섬유 4개사, 기타 8개사임

[표 8] 국내복귀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사)

업종	전기전자	주얼리	자동차	금속	기계	신발	화학	섬유	기타	계
기업수	16	13	11	8	7	7	6	4	8	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복귀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북 18개사, 부산 12개사, 경북 11개사, 경기 10개사, 충남 8개사, 세종 4개사, 인천 4개사, 경남 4개사,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각 2개사, 강원 1개사임

[표 9] 국내복귀기업 지역별 현황

(단위: 개사)

지역	전북	부산	경북	경기	충남	세종	인천	경남	대구	광주	울산	충북	강원	계
기업수	18	12	11	10	8	4	4	4	2	2	2	2	1	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68개사, 중견기업이 11개사, 대기업이 1개사임

[표 10]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사)

규모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기업수	68	11	1	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2) 지원 실적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실적을 보면 법인세는 총 14억 5,400만 원을, 관세는 총 1억 9,700만 원을 감면받음
- 법인세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국내에 공장 완공 또는 증설에 시간이 걸리고, 공장 가동 이후 이익이 발생해야 감면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임

[표 11]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및 관세 감면실적(2015~2019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법인세	365	571	234	284	-	1,454
관세	25	47	13	13	99	197

주: 2019년도 감면 실적은 집계 중으로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총 170억 200만 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함
 - 투자보조금은 입지·설비 투자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12]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실적(2015~2019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투자보조금	2,255	4,258	3,033	0	7,456	17,00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총 31억 1,000만 원을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함
 - 고용보조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함

[표 13] 국내복귀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실적(2015~2019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고용보조금	969	1,335	477	324	5	3,1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복귀기업에 법인세 14억 5,400만원과 관세 1억 9,700만 원을 감면해 주었고, 투자보조금은 170억 200만 원, 고용보조금은 31억 1,100만 원을 지원함

[표 14] 국내복귀기업 지원실적(2015~2019년)

(단위: 백만 원)

구분	법인세 감면	관세감면	투자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2015	365	25	2,255	969
2016	571	47	4,258	1,335
2017	234	13	3,033	477
2018	284	13	0	324
2019	-	99	7,456	5
계	1,454	197	17,002	3,1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2.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현황

- 리쇼어링 기업의 지방 유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에 대하여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⁷⁾

가. 지원정책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투자 보조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 인천광역시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준비 중임
- 울산광역시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입자·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사업을 준비 중임
- 강원도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부지매입, 투자 보조금, 임대료, 교육 훈련비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유턴기업 발굴·유치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투자보조금 및 성장촉진지역 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7) 각 지방자치단체에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과 건의 및 애로사항을 문의한 결과, 부산·인천 등 5개 광역시와 경기·강원 등 8개도에서 회신서를 보내음

- 충청남도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기업유치 설명회,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추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기숙사 임차 지원,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음
- 경상남도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해외진출기업 D/B 구축 사업,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국내복귀 성공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주얼리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 사업, 주얼리단지 임대공장 건립 사업, 주얼리 유턴기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전라남도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으로 국외 설비 등을 이전해 오는 경우 선박 및 항공운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나. 건의 및 애로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에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문의한 결과 부산·광주 등 4개 광역시와 경기·강원 등 7개의 도에서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비수도권 지역에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이는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방안 중 하나로 입지·시설 투자 보조금을 현재 기업당 100억 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200억 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지역은 1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리쇼어링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됨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완화: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 울산광역시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현행 25%에서 15%로 완화해 줄 것을, 경상북도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없이 국내사업장의 여유 공간에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량을 늘릴 경우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의견을 제시함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지원: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 강원도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⁸⁾에 준하는 지원을, 경기도는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전라남도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수도권 원거리 지역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차등지급을 요청함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해외진출기업 수가 적은 지자체는 유턴동향 파악 경로가 한정되어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해외진출기업 현황 및 유턴투자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밖에 전라북도는 수도권공장 총량 범위 내 부지 우선 배정은 비수도권 지역 유턴 기업유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충청남도는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의

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경우 국내실적이 없는 기업은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보증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음

[표 15] 지방자치단체 건의 및 애로사항

지방자치단체	건의 및 애로사항
부산광역시	· 비수도권 지역에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광주광역시	· 국내 신·증설 시 국내 기존 사업장의 유희부지에 생산설비 추가 설치 시 국내복귀기업 인정
울산광역시	· 국내복귀 선정기준 완화(해외사업장 축소요건 25%→15%) · 국비지원 비율 상향(65%→80%) · 기존 사업장에서 조직신설, 전환배치 등도 상시근무 인원 인정
대구광역시	· 대기업의 해외사업장 감축비율 완화 · 국내 신·증설이 없는 경우도 인센티브 제공
강원도	·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준하여 지원
경기도	·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
충청북도	· 비수도권 지역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국비 지원비율(60%)과 동일하게 지원
충청남도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보조금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건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보증하는 방안 · KOTRA와 유턴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경상북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한 ·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없이 국내사업장에 설비 증설 시 국내복귀기업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전라북도	· 첨단업종 기업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방인재 유출과 지방경제 침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 부지 우선 배정은 비수도권 지역의 유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전라남도	· 비수도권 지역의 보조금 차등 지원 · KOTRA와 유턴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회신 자료(2020.8.)를 재정리함

Ⅲ.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

1. 미국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 1990년대에 미국 제조업체들은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노동집약산업을 생산비용이 낮은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로 활발하게 이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내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자 미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음
- 미국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00년 1,964.4만 명에서 2010년 1,408.1만 명으로 연평균 3.3% 감소하고, 2010년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9.6%까지 상승함⁹⁾
- 이를 계기로 국가 기간산업인 제조업을 다시 진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개발도상국의 인건비 상승과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제조비용 감소를 계기로 오바마 정부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게 됨¹⁰⁾
-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부터 ‘미국 제조업 부흥(renaissance of the U.S. manufacture)’을 통하여 전반적인 제조업 강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9) 양금승,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7, p.19.

10) 이연경, 「미국의 리쇼어링 (Reshoring) 추진 동향 분석」. 『계간 해양수산』 3(2), 2013, p.132.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첨단제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에 관한 보고서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며, ‘첨단 제조업’을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조세 감면 등 세계 인센티브, R&D 강화, 인력 육성 등의 정책을 제안함
- 2012년 2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부와 공동 작성한 세계 개편안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세제혜택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이 법안은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활동 공제법안(Domestic Production Deduction)을 통해 미국 자국 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제조업체의 경우, 최대 25%의 특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4년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 (The Obama Administration’s Proposal to Establish a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에서는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업 기술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단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장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외에 진출할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트럼프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세계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다단계 누진세율 15~35%)에서 단일세율 21%(2018년부터 영구적용)로 인하하고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 기업설비투자(장비, 기계 등) 경비 100% 공제 등 기업의 추가 세금경감을 위한 조항을 마련함¹¹⁾

11) 심혜정·강내영, 「미국 세계개편 주요 내용과 각국의 대응현황」,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2018, p.2.

- 2010년 미 의회는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고자 「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of 2010(제조업 강화법안)」 과 「Preventing Outsourcing(아웃소싱 제한법)」 을 제정함
 - 미국 내 생산을 위한 필수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고,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조업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 2014년에는 「2013 미국 제조경쟁력 강화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3)」 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통해 제조업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전시킴
- 2016년에는 미국기업이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2016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6)」 을 제정함

[표 16]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 관련 법령 내용

법령 번호 및 제정일자	법안	내용
Public Law 111-227 2010.8.11	미국 제조업 강화법 (U.S. 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미국 내 생산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는 관세를 줄이고, 해외로부터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함
Public Law 111-226 2010.8.10	아웃소싱 제한 (Preventing Outsourcing)	기업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장려하는 세금 면제 종료
Public Law 113-235 2014.12.16	2013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3)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 지시하여 관련 기관과 함께 제조업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전시킴
Public Law 114-159 2016.5.20	2016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6)	미국기업이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자료: 이수영외, 앞의 책, 2018, p.113.

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정책 동향¹²⁾

-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내수 및 기업투자가 급격히 감소함
- 1분기 미국 개인 가용소득은 2%, 소비는 7.5%로 감소했으며, 산업부문 역시 4월 제조업관리지수(PMI)가 전월 대비 12.4p 하락함
- 특히, 중국 내의 코로나 19 확산으로 부품 등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제너럴 모터스(GM), 포드(Ford), 크라이슬러(Chrysler) 등 자동차 3사가 조업 중단되는 등 제조업 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표 17] 미국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조업 피해 현황

산업	현황	주요기업
자동차	· 자동차 3사 조업 중단 · 1분기 판매량. 포드 -13%, 지엠 -7%, 크라이슬러 -10%	Ford, GM, Chrysler
백색가전	· 2020년 연간매출목표 하향 조정	Whirlpool, GE
I/T 전자	· 중국 공급망 차질/ 글로벌 수요감소로 연간매출목표 하향 조정	Apple, Microsoft
석유화학	· 유가하락에 따른 신규 프로젝트 중단	Exxon Mobil, Texaco
항공	· 코로나 19 최대 피해 산업 · GE 10억 달러 손실 발표/보인 정리해고 등	Boeing, Lockheed Martin

자료: KOTRA 북미지역 본부(2020.5.)

-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유지해 온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필요성과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함
- 미국의 중국 의존도는 미·중 통상 분쟁 이후 17% 가량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2) 성기주, ‘북미지역 유통과 제조업의 변화, 우리 기업이 주목할 기회는’, 코트라 뉴욕 무역관, 2020.

높은 상황으로, 다른 아시아 저임금 국가 및 멕시코, 동유럽 등으로 분산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리쇼어링 유도를 위한 제조업 지원 자금 6,000억 달러를 배정하고 국립제조업원(National Institute of Manufacturing)의 신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에 있음
 - Tom Cotton 상원의원(공화당, 아칸소)은 중국에의 과도한 의약품 및 제약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대중국 의약품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 의료장비 및 약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Protecting our pharmaceutical supply chain from China Act’를 지난 3월에 발의함¹³⁾
- 기업들 역시 물류비용 절감과 중점시장 인접성,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급망 위기 등으로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Bank of America에서 발표한 글로벌 기업의 리쇼어링 수요조사에서 중국에 위치한 공급망을 타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산업분야는 첨단장비, 반도체, 소비재 등 8개 분야임

[표 18]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공급망의 타국 전환 의사를 밝힌 분야

산업	북미	유럽	아시아(중국제외)
첨단장비	●		●
반도체	●		●
내구성 소비재	●	●	●
유통	●	●	●
자동차 및 부품	●		●
소재/원자재	●		●
의료기기	●		
식품/음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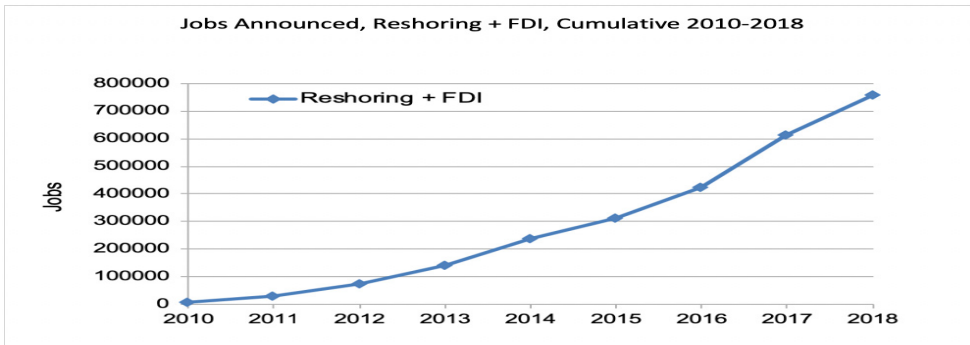
자료: Bank of America, 2020.

13) 한국무역협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KITA 통상리포트』 VOL.06, 2020, p.10.

라. 지원정책 주요성과

- 미국 Reshoring Initiative¹⁴⁾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8년 제조업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총 75만 7천 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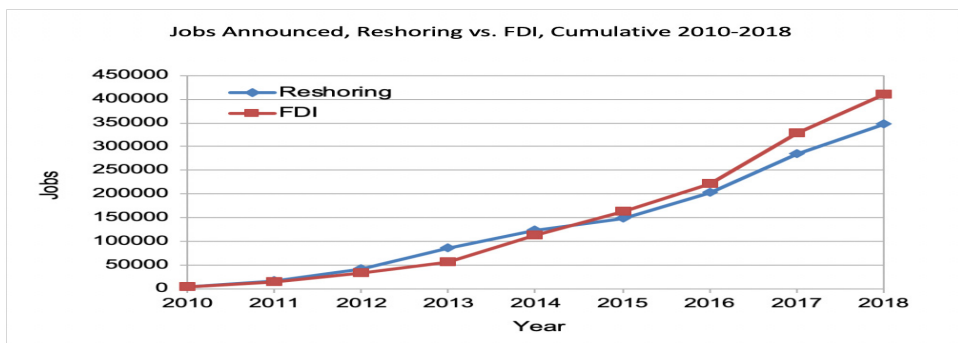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일자리 누적 현황



자료: Reshoring Initiative, 「2018 Reshoring Initiative Data Report」, 2019.

- 이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한 일자리가 약 40만 7천 개, 리쇼어링이 약 35만 개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 미국의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별 일자리 누적 현황



자료: Reshoring Initiative, 앞의 자료

14)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2010년 창설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비영리기관)

- 리쇼어링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외부요인으로는 제품품질, 화물비용, 총비용, 제품 이동시간, 임금상승 등을 들 수 있고, 내부 요인으로는 정부의 인센티브, 시장 또는 고객 접근성 용이, 숙련된 노동력, Made in USA로 인식되는 브랜드 이미지, 공급망 적합성 등으로 조사되고 있음

[표 19] 미국의 리쇼어링 외부 및 내부 요인

외부 요인	내부 요인
제품품질	정부의 인센티브
화물 비용	시장 또는 고객 근접성
총 비용	기술력 있는 숙련된 노동자
제품 이동시간	브랜드 이미지
임금상승	공급망 적합성

자료: Reshoring Initiative, 앞의 자료

- 미국 제조업체의 대표적 리쇼어링 사례로는 포드(Ford)사의 캔자스시티 공장 투자,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사의 미시건 공장 투자, 월풀(Whirlpool)사의 중국 광둥성 생산라인의 오키오주 그린빌로 이전 등이 있음

[표 20]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 국내복귀 사례

기업명	복귀 사례
F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에 중국 투자 대신 캔자스시티의 조립공장 설비 현대화를 위한 4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 • 캔자스시티 공장의 현대화 및 3,750명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미주리주 의회에서 포드에의 조세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 • 2013년에는 캔자스 공장에 2,000명의 추가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
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미국 내 생산 라인에 54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미시건의 3개 공장에 7억 8,350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투자
Global Found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뉴욕주 말티에 최신 실리콘 웨이퍼 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뉴욕주로부터 공장 설립에 드는 비용 중 14억 달러를 청구비용 보전의 형식으로 지급받음
Caterpill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텍사스주 빅토리아에 유압식 굴삭기 제조공장 설립 발표 • 공장설립으로 500명 이상의 노동자 신규 고용 계획 • 유압식 굴삭기의 미국 내 생산규모 세 배로 증가 예상
Wha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멕시코 공장 생산량의 약 50% 가량을 미국 생산으로 전환
N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주력제품인 ATM 기기의 생산을 중국, 인도, 헝가리 등에서 조지아주 공장으로 복귀 • NCR의 복귀를 위하여 조지아주는 조세감면 혜택과 1500만 달러 상당의 고용 및 R&D 보조금, 고용된 인력에 지불되는 임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
Whirlp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중국 광둥성 생산라인을 오하이오주 그린빌로 이전 결정 • 오하이오주에서는 이전 후 5년간 신규로 추가 지급되는 임금비용에 대해서 45%의 세금공제 혜택 제공 • 2014년 400개 일자리 추가 발표
Otis Elev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멕시코 생산라인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전 • 이전과 동시에 4000만 달러의 신규 투자와 360개 일자리 창출 • 공장소재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렌스 카운티는 이전 후 30년 간 Otis 공장 건물의 재산세 감면, 신규고용 인력에 대하여 2016년까지 400명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1인당 1000달러의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
Master 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아시아에서 밀워키로 공장을 이전 • 이전과 더불어 밀워키 공장에 1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Cole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공장을 중국에서 캔자스주 위치타로 이전
Sleek Au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초에 첨단 헤드폰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플로리다주로 이전

자료: 문중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현황과 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능성』, 산업연구원, 2017.

2. 일본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 일본은 장기적인 불황을 탈피하고 엔화 강세로 약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13년 일본재흥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 유도정책을 추진함
- 2012년 아베노믹스 추진과 함께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 일본 국내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던 일본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회귀하기 시작되자¹⁵⁾ 아베 내각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함

[표 21] 일본의 산업 활성화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현황

연도	산업 활성화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내용
2007	「기업입지 촉진 등에 의한 지역에 있어서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업입지촉진법)」 제정
2013	일본재흥전략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시책
2013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2013년 12월 제정, 2014년 1월 20일 시행)
2016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등 수립
2017	「기업입지촉진법」을 폐지하고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제정
2018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 일부 개정

자료: 사공목,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9, p.107.

15) 박성훈 외,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대외경제연구원, 2017, p.40.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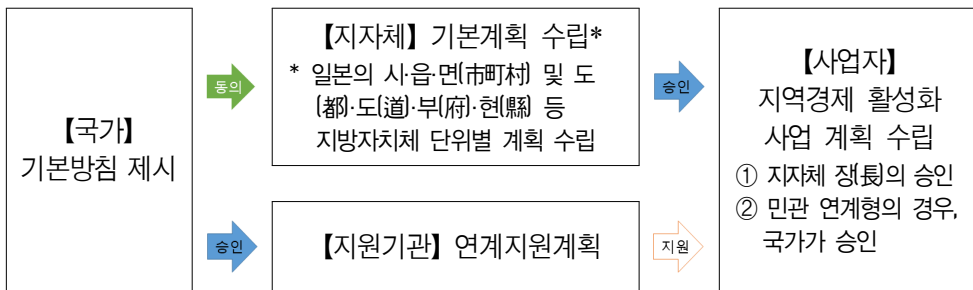
- 일본은 중앙정부가 리쇼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유턴기업의 국내 유치정책을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철폐, 법인세 인하, 경제특구제도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임¹⁶⁾
- 일본 리쇼어링 기업에 영향을 미쳤던 투자활성화 정책 중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과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산업입지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분산·이전하는 공업재배치를 실시해 왔음
 - 도쿄권과 오사카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업 3법(「공업등 제한법」, 「공장입지법」, 「공업재배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시구역에서의 제조업 입지를 제한함
 - 그러나 세계화, 엔고 현상 등 대외변수와 맞물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집적이나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업재배치 관련 법률은 철폐됨
 - 1997년 「지역산업집적 활성화법」과 1998년 「신산업창출촉진법」이 제정되고, 2002년 「기성 시가지공장제한법」과 2006년 「공업재배치법」이 폐지됨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해외기업, 수

16) 강수연 문제철, 「제4차 산업혁명과 광주전남지역으로의 리쇼어링」, 『전남광주 경제이슈』 N0.2018-1, 2018, p.14.

도권 기업, 리쇼어링 기업 등에 대한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됨

- 산업입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리쇼어링 기업에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는 「미래지역투자촉진법」이 있음
 -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발전의 견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 제정됨
- 지역미래투자촉진 정책은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시정촌 및 도도부현)가 기본계획을 책정하면 중앙정부가 동의하고, 동의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사업자가 지역경제건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도도부현 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임

[그림 3]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 정책 구조



자료: 經濟産業省, 「地域未來投資促進政策について」, 2020.

-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원으로는 지역미래투자촉진사업비 등 예산 지원조치, 과세특례 등 세제지원, 중소기업 설비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후보기업 발굴 등 정보지원, 공장입지법 특례 등 규제완화 등이 있음

[표 22]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법」 관련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예산에 의한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미래투자촉진사업비(2020년도 예산 142.7억 엔) 제조업·상업·서비스 고도연계촉진사업비(2020년 예산 10.1억 엔) 지역혁신기본정비사업비(2019년도 예산: 5.5억 엔) 지방창생추진교부금 활용(2020년도 예산: 1,000 억 엔)
세제에 의한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의 특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조치 지자체의 고정자산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한 보전 조치
금융에 의한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설비자금, 운전자금을 고정금리로 용자 지방경제활성화지원기구(RESAS),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에 의한 펀드창설 및 활용
정보에 의한 지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등을 활용하여 후보기업 발굴 등을 정보제공
규제 특례 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입지법」의 녹지 면적을 완화 농지전용허용, 시가화조정구역의 개발허가 등 고려 일반사단법인을 지역단체상표 등록주체로 추가 지자체에 사업자가 사업환경정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經濟産業省, 앞의 자료

- 이와 같은 투자촉진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을 지방으로 리쇼어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정책 동향¹⁷⁾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품·부품소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정책을 통해 리쇼어링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17) 김승호, 「Uncontact의 일본, 그 속에 나타날 시장 기회는」, 코트라 도쿄 무역, 2020.

- 일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2020년 4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생산거점 다변화(ASEAN 아세안 국가, 국내회귀 등) 및 국내생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선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국내 투자촉진 사업비 보조금 지급과 해외 공급선 다원화 지원방안이 있음
- (국내 투자촉진 사업비 보조금) 일국에 집중되고 있는 제품·소재의 생산거점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장신설 및 생산설비 도입이 보조대상임
 - 추경예산 약 2,200억 엔 규모로 보조율은 대기업 1/2, 중소기업 2/3임
- (해외 공급선 다원화 지원) 일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ASEAN 국가로의 생산설비 투자, 실증사업 시행 및 시장조사 관련 비용을 지원함
 - 추경예산 약 235억 엔 규모로 보조율은 대기업 1/2, 중소기업 2/3임

라. 지원정책 주요성과

- 2017년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생산 기업 중 과거 1년간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거점을 옮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본으로의 '국내회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2018년 모노즈쿠리백서¹⁸⁾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국내회귀'의 이유로 인건비 26.0%, 리드타임 단축 23.0%, 품질관리상의 문제 22.0%, 환율요인 15.0%,

18) 經濟産業省等, 「ものづくり白書」, 2018年版, 2018.

원재료비 15.0%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일본 제조업체의 국내회귀 주요사례로는 다이킨(시가현), 파나소닉(효고현), 혼다(사이타마현) 등의 사례가 있음

[표 23] 일본기업의 유턴 및 투자 확충사례

기업명	복귀 사례
샤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00억 엔을 투자하여 미에현 가메야마시(亀山市)에 액정패널, 액정 TV 등을 일괄 생산할 수 있는 대형공장 준공(2003) • 가메야마 공장과 관련 40개사의 고용 약 7,200명 증가
캐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생산 거점을 중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으로 이관 (2003) • 오이타현(大分県)에 디지털 카메라 신공장 건설 등 2004-2006년간의 설비투자 • 7,800억 엔 중 80%를 일본 내에 투자 • 2013년 42%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생산비율을 2015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릴 방침(닛케이신문, 2014)
파나소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자레인지, 에어컨, 세탁기 등 백색가전을 이전 • 가정용 조리기구는 효고현 고베시(神戸市)로, 공기 천정기는 아이치현 공장으로 이관
다이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에어컨 25만 대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일본 시가현(滋賀県)으로 이전 (Wall Street Journal, 2015)
소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생산하던 대미 수출용 비디오키메라를 2002년 이후 일본 전량 생산으로 전환 • 해외수출 제품의 부품 40% 이상을 국내 조달, 일본 내 생산 결정
켄우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이동(2003)
온워드 카시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등의 니트 의류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전환(2004)
미쓰시타 전기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생산기지를 일본 본국 생산으로 이전(2004) • 이바라키(茨城)에 PDP TV 및 업무용 PDP 공장 건설 및 우오즈에 DVD 레코더용 LSI 공장 건설
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0만 대의 완성차 공장을 사이타마현(埼玉県)에 건립(2010)

자료: 박종철, 앞의 책, 2017, p.10.

3. 대만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 1980년부터 대만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2009년 2월 기준으로 중국으로 진출한 대만기업의 수는 3만 7,232개, 투자금액은 761억 2,700만 달러에 달하여 대만의 전체 해외투자의 약 56%를 차지함¹⁹⁾
- 그러나 2008년 출범한 마잉주 정부의 ‘大3통(大三通)’ 정책²⁰⁾과 2010년에 체결된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양안 간의 인적·물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관세 철폐로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가 증대됨
- 2008년 8월 대만 전자전기협회(台灣區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가 대륙에 진출한 2,612개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中國大陸地區投資環境與風險調查)에 따르면, 대만으로 리쇼어링을 희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전년 대비 8.05%p(1.83→9.8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²¹⁾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 대만은 2006년 「해외투자기업 유턴투자 유치 강화조치 및 세부계획(加強協助台商回國投資措施暨細部計畫)」을 발표하고, 11월에는 유턴투자추진

19) 이수영 외, 앞의 책, 2018, p.132.

20) 중국과 우편(通郵), 상업(通商), 교통(通航)의 교류를 개선하는 정책

21) 이수영 외, 앞의 책, 2018, p.133.

전담부서(促進台商回台投資專案小組)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²²⁾

- 2007년 7월 말에 단일화된 서비스창구를 개설(台商回台投資服辦公司)하여 대출 자문, 각종 투자 인센티브 안내, 토지 및 공장용지 물색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
- 2009년에 유턴투자 배증 금의환향계획(台商回流陪增衣錦還鄉計劃)을 실시하여 리쇼어링을 장려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홍콩증시와 대만증시의 상호 상장을 허가해 기존에 중국대륙으로 투자했던 대만기업들이 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됨
- 2012년 10월 마잉주 총통은 ‘중견기업 도약상승 계획(中堅企業躍升計劃)’을 시행하며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유턴 및 투자를 촉구함
 - 이 계획은 3년 동안 150개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집단을 육성해 약 1,000억 대만 달러 상당의 투자효과 및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함
- 2012년 11월, 대만 국민당은 ‘대만기업 국내 유턴 및 투자추진방안(加強推動台商回臺投資方案)’을 발표하여 2014년 말까지 고부가가치 제품 및 핵심 부품산업, 대만계 다국적기업 중 R&D 부서 및 경영본부, 그 외 대만 정부에서 장려하는 업종이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경우 우대책을 제공함²³⁾
 -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자를 평균 약 15~20% 가량 초과해 고용할 수 있으며, 5년간 ‘외국인노동자 고용세(就業安定費)’를 면제함

22) 임민경·여지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80.

23) 임민경·여지나, 앞의 책, 2013, p.82.

- 또한, 리쇼어링 시 가장 중요한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유입제한을 완화하는 등 우대정책을 실시함

[표 24] 대만의 리쇼어링 기업 우대정책

우대책 카테고리	주요 내용
토지 우대	· 처음 2년간의 임대료 100% 면제, 3~4년차에는 40%, 5~6년차에는 20%우대
자금 제공	· 중소기업신용기금보증금 자원(중소기업의 대출 보증, 동일 기업의 최대 융자한도는 1억 대만 달러까지 가능) · 국가발전기금 지원(이 기금의 100억 대만달러를 민간 투자회사와 운용, 중소기업에 자금 형성)
세제 혜택	· 영리사업자 소득세율을 17%까지 낮춤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고도로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15%의 공제혜택 제공
R&D 보조	· 소기업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보조(SBIR) · 산업기술개발계획, 과학기술응용 및 서비스 혁신 계획, 선도적 신제품 개발계획(자격요건 부합자에 한해 자금 보조) · 서비스업 연구기술 개발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	· 산업별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비율 완화(자국민 대비 약 10~35%까지)

자료: 임민경·여지나, 앞의 책, 2013, 재인용, p.83.

-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 혁신 및 고부가가치 업종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턴기업투자환영 행동방안(歡迎台商回台投資行動方案)”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²⁴⁾

24) 윤별아,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외정책대응 및 감사시사점」, 감사연구원, 2019, p.34.

다. 지원정책 주요성과

- ‘EMINENT’는 여행 가방, 레저용품 전문 설계와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및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투자정책 및 관세 우대 때문에 2014년 대만으로 복귀하였으며, 대만 공장에서 고가의 제품 위주로 생산을 이어가고 있음
- ‘위치구어지’는 신발 OEM 업체로 1995년에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등산화, 운동화 등을 생산하였으나 그룹 경영의 효율 극대화, 대만의 글로벌화된 인재 관리와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지역관리 본부를 대만에 설립하고 2012년에 글로벌 마케팅, 구매 및 관리 분야를 복귀시킴²⁵⁾
- 최근에는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대가 중국 본토의 생산거점을 대만 및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페가트론(和碩), 관타 컴퓨터(廣達電腦), 인벤틱(英業達), 위스트론(緯創), 컴팔(仁寶) 등 5대 대만 전자기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은 약 500억 NTD(한화 1조 8천억 원 상당)를 투자하여 동남아, 미국, 대만 등 지역의 생산라인을 확충,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함²⁶⁾
 - (컴팔) 약 60억 NTD(한화 2,000억 원 상당)를 투자하여 대만, 베트남 공장 확충을 추진함
 - (인벤틱) 약 60억 NTD를 투자하여 대만 타오위안(桃園) 공장 확충, 향후 대만, 동남아, 멕시코에서 생산할 계획임

25) 백외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요인 사례연구 - 부산지역 신발제조업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98.

26) 주 타이베이 대표부, 「리쇼어링 등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당지 영향 관련」, 2019.

- (판타) 50억-60억 NTD를 투자하여 타오위안에 1만평 공장 용지를 매입하여 생산라인을 확대함
- (위스트론) 향후 5년간 216억 NTD를 투입하여 인도에 생산라인 건설할 계획이며, 인도 정부가 약 43.2억 NTD(한화 1,500억 원 상당)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
- (페가트론) 약 93억 NTD(한화 3,300억 원 상당)를 투자하여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확충, 빠르면 2019년 4월부터 정식 가동 예정임

[표 25] 대만의 리쇼어링 투자금액 및 유치건수

연도	투자금액(억 위안)	유치건수(건)
2010	409	107
2011	469	62
2012	519	57
2013	529	21
2014	540	14
2015	541	44

자료: 윤별아, 앞의 책, 2019, p.36. 재인용

4. 독일

가. 지원정책 추진배경

-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로 제조업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등으로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임금 국가인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이 빠져나감
- 독일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 활용 등을 이유로 동유럽 국가(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로 공장을 이전하여 부품을 조달하게 됨
- 이러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국내 고용창출의 어려워지고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일 제품의 비중도 낮아지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함
- 독일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8.9%에서 2011년 6.5%로 감소하였고,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9.5%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8.7%로 하락함²⁷⁾
- 이에 독일 정부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라는 인식하에 첨단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함
- 기업들도 생산품 운송비용 증가, 지적재산권 침해, 진출국가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7) 김계환·박상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의 변화』, 산업연구원, 2017, p.50.

나. 지원정책 주요내용

- 독일의 리쇼어링 정책은 2011년부터 시작된 하이테크 전략인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²⁸⁾의 틀 안에서 추진됨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2006년 8월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첨단기술전략’에서 시작된 산업정책으로 2011년 1월에 공식적으로 발의됨
- 2012년 1차 초안이 발표되고 2013년 최종 제안이 완성되어 독일의 대표적인 3개 협회 (BITKOM, VDMA, ZVEI)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표준화, 연구, IT 보완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하여 2015년 재수정·보완된 제안을 발표함²⁹⁾
- 인더스트리 4.0의 경우 개발 속도의 지연,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에 따른 소극적인 참여,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함³⁰⁾
- 인더스트리 4.0 기술은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고임금 국가에서도 경제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등은 기업의 유연성과 생산효율화를 담보하여 공장의 경제성 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리쇼어링 유인요인으로 작용함
- 실제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28) 인더스트리 4.0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생산과정을 최적화한 제4세대 산업생산 시스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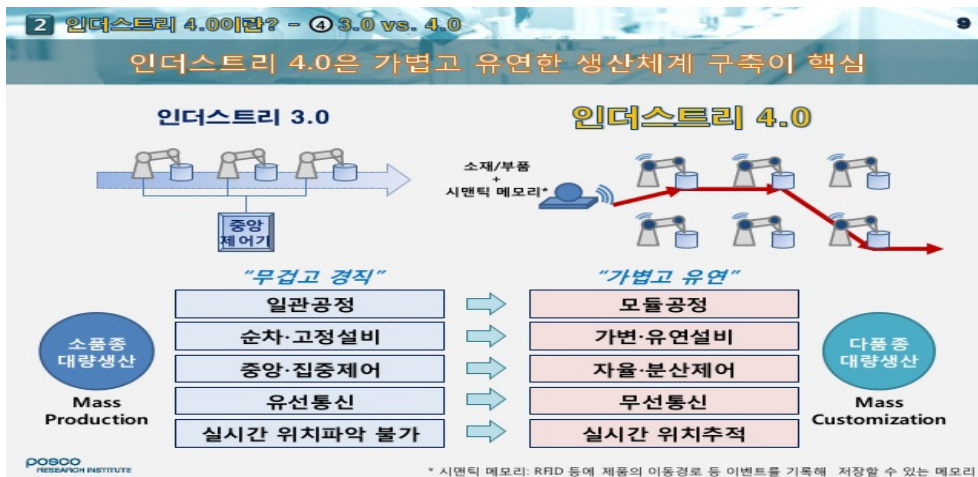
29) 이수영 외, 앞의 책, 2018, p.130.

30) 강수연·문제철, 앞의 책, 2017, p.12.

않는 기업에 비해 10배 이상 리쇼어링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³¹⁾

- Muller, Dotzauer, and Voigt(2017)이 독일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30%의 기업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활용 등 혁신 기술 활용을 위해 국내로 생산설비를 옮기거나 해외공급자에서 국내 공급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³²⁾

[그림 4] 인더스트리 3.0과 인더스트리 4.0 생산체제 비교



자료: 김계환·박상철, 앞의 책, 2017, p.60.

다. 지원정책 주요성과

- 독일 아디다스의 경우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에 공장 설비를 구축해 왔으나, 2016년에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안스바흐에 무인공

31) Dachs, Bernhard, Steffen Kinkel, and Angela Jäger, 「Bringing it allback home? Backshoring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nd theAdoption of Indsutry 4.0 Technologies.」, MPRA Paper, No. 83167. 2017.

32) 최혜린, 「주요국 리쇼어링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Research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p.5.

정 시스템을 갖춘 ‘스피드 공장(Speed Factory)’을 설립함

- 안스바흐 스피드 공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3D프린팅, 인공 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 등을 도입하여 고객 맞춤형 운동화의 생산 기간을 크게 감축(18개월→5시간)함
- 독일의 지멘스는 암베르크에 전체 공정의 75%를 무인공정시스템(로봇)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
- 보쉬(Bosch Rexroth)와 ABB 그룹은 하노이의 산업박람회에서 자율 로봇, 스마트 플로어를 사용하여 로봇과 장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미래 공장구현을 통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제시함³³⁾
- ABB는 생산공정에서의 로봇틱과 자동화 투입을 통해 유럽 내 생산비용을 중국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입지선정 시 근로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국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나섬

33) 박소영, 「인더스트리 4.0, 독일 자국 제조업의 귀환을 알린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2019.

5. 소결

- 각 나라별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산업공동화 방지’라는 공통된 목적 외에 미국은 ‘제조업 부흥’,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만은 ‘대중국 경제중속 탈피’, 독일은 ‘제조업 부활’ 등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목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의 특징을 보면, 미국은 셰일 가스 개발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제조비용 감소를 활용한 점, 일본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지역특색에 부합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유치하는 등 고도의 지자체 자율성을 활용한 점, 대만은 중국과의 양안기본협정(ECFA) 체결로 양안 간 물류비 절감 및 통관절차 개선 등을 활용한 점,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인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을 통한 기술혁신을 활용한 점을 들 수 있음
- 리쇼어링 결정요인은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임금상승, 제품이동 시간, 시장 또는 고객 접근성, 공급망 적합성 등을 들 수 있고, 일본은 인건비 상승, 제품 발주부터 납입까지의 리드타임 단축, 품질 관리, 엔화 약세 등을, 대만은 기술접근성, 정부 인센티브를, 독일은 기술혁신, 제품 품질 등을 들 수 있음.
- 주요 정책으로는 미국의 경우 법인세 인하 등 투자 환경제고와 제조업 강화 법안 마련 등을 꼽을 수 있고, 일본은 제조업 입지제한 정책 등 규제 철폐와 미래지역투자촉진 정책을, 대만은 세제·토지·자금·R&D·외국인 노동자 고용 우대 등을,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활용한 첨단 제조업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표 26]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특징

구분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부흥 · 산업공동화 방지 ·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공동화 방지 ·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경제종속 방지 · 산업공동화 방지 ·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부활 · 산업공동화 방지 · 일자리 창출
정책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셰일가스 개발,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제조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안기본협정 (ECFA)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y 4.0을 통한 기술 혁신
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상승 · 제품이동 시간 · 시장 또는 고객 접근성 · 브랜드 이미지 · 공급망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상승 · 리드타임 단축 · 품질관리 ·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상승 · 기술 접근성 · 정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 제품 품질
주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인하 등 투자 환경 제고 · 해외진출 기업 세금 공제 철폐 · 제조업 강화법안 등 제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입지제한 정책 등 규제 철폐 · 미래지역투자 촉진정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투자·자금 R&D·외국인노동자 고용 등 우대 정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테크 전략을 활용한 첨단 제조업 구축

자료: 'Ⅲ.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현황'을 재정리함

IV.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리쇼어링 대상기업 확대

가. 문제점 및 필요성

- 리쇼어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각각의 특징에 따라 리쇼어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지원제도에는 유연하게 반영되지 않음³⁴⁾
- 첫 번째는 해외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중간재(재화·서비스)를 생산하다가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로 해외투자 회수와 국내 신규투자가 수반됨(해외인소싱→국내인소싱)
- 두 번째는 해외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중간재를 생산하다가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 타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로 복귀기업 자체의 해외투자 회수가 이루어지나 국내 신규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음(해외인소싱→국내아웃소싱)
- 세 번째는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해외투자 회수는 없지만 국내 신규투자는 이루어짐³⁵⁾(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
- 네 번째로 해외 타기업에 맡겼던 중간재 생산을 국내 타기업에 맡기는 경우로 해외투자 회수나 국내 신규투자가 수반되지 않음(해외아웃소싱→국내인소싱)

34) 이수영 외, 앞의 책, 2018, p.31.

35)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 없이 기존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신규투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표 27] 리쇼어링의 종류에 따른 경제효과

종류	오프쇼어링 → 인쇼어링	경제 효과
①	해외인소싱 → 국내인소싱	해외투자 회수(○), 국내 신규투자(○)
②	해외인소싱 → 국내아웃소싱	해외투자 회수(○), 국내 신규투자(×)
③	해외아웃소싱 → 국내인소싱	해외투자 회수(×), 국내 신규투자(○)
④	해외아웃소싱 → 국내아웃소싱	해외투자 회수(×), 국내 신규투자(×)

자료: 이수영 외, 앞의 책, 2018, p.32. 참고하여 재정리

-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인정하는 리쇼어링 기업은 해외투자 회수와 국내신규 투자가 수반되는 첫 번째 종류만 해당되어 매우 제한된 범위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리쇼어링 기업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였기 때문임
- 이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외국 투자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하여 네 종류 모두 리쇼어링에 해당됨
 - 우리나라의 경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규정하여 운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그 대상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표 27] ②와 ④는 국내 신규투자 없이 아웃소싱을 통해 국내생산을 늘린 경우로 국내에 직접적인 투자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아웃소싱 계약을 받아 생산하는 국내업체에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③의 경우도 해외아웃소싱을 하던 물량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국내 설비 증설과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하지만 이 경우 모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정하는 리쇼어링 기업 범주에 속하지 못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입지·설비 보조금, 세제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적용대상을 엄격히 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표 33]②, ③, ④의 경우도 자본유입, 국내 생산기반 확충, 고용창출 등 국내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현행법에는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을 축소한 기업만을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해외인소싱이나 해외아웃소싱을 포함한 사업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즉 국내복귀기업의 범주 안에 위에 서술한 네 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네 가지 유형에 따른 인센티브는 하위법령에 차등있게 지원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던 첫 번째 유형 이외에 나머지 세 유형도 지원을 받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리쇼어링에 대한 개념 적용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는 해외생산물량을 국내로 재배정하는 것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상북도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없이 국내사업장에 설비 증설 시 국내복귀기업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가. 문제점 및 필요성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조사임
- 해외진출 동기, 현지 경영 환경, 현지 경영 환경의 변화, 현지 경영 성과, 국내복귀 시 현지에서의 어려움, 국내 복귀 시 국내에서 직면할 문제점, 선호 지원정책 등 해외진출기업 경영 환경이나 국내복귀 의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이를 기초로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대만의 경우 리쇼어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64개의 기업이 돌아오는 등 성공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음³⁶⁾
- 지방자치단체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복귀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잠재적 국내복귀 의향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6) 이수영 외, 앞의 책, p.152.

나. 개선방안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9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그러나 법률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조사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실시여부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실태조사가 체계적이고 정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주기(예시: 매년, 또는 2년 마다)를 정하고, 현재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투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 규정상 해외진출기업 법인명, 진출지역, 업종 등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음
 - 해외진출(투자)에 대한 자료는 수출입은행의 외환송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통계만 공개하고 있음
- 정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3.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가. 문제점 및 필요성

-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이 아래와 같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확대가 필요함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산업 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할 것
 -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 산업 소분류상 동일할 것
-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를 보더라도 신청·접수와 검토, 지원 결정, 지원신청, 선정여부 결정까지 KOTRA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체가 되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그림 5] 국내복귀기업 신청절차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

- 미국의 경우 주정부나 지자체가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지원하고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철폐, 법인세 인하, 경제특구제도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함

나.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이나 특색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복귀기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³⁷⁾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사행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산업 이외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37) 지식서비스업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함

[표 28]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L 부동산업
B 광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제조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P 교육서비스
F 건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H 운수 및 창고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J 정보통신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K 금융 및 보험업	
21개	

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률 및 시행령으로 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하는 현재의 경직된 지원체계에 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이나 강점(특성)에 맞춰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규정에 막혀 기업유치가 힘든 실정임
- 따라서 대상업종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할 게 아니라, 선정 절차에서 산업 통상자원부가 검토 및 심사 시 사행산업 등 문제가 있는 산업을 제외하고 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방 향으로 지원체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도 리쇼어링 기업의 투자액에 비례해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액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산업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량권의 부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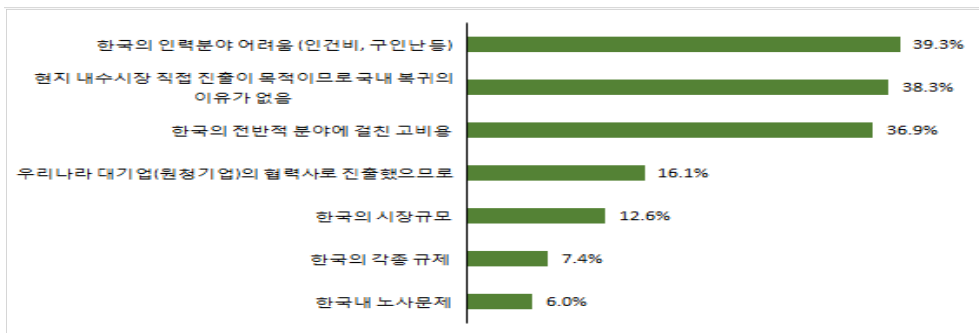
-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재정지원 승인권자를 중앙관서장이 아닌 지자체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인력문제

가. 문제점 및 필요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조사한 2014년과 2016년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한국 내 높은 인건비와 심각한 구인난 등을 꼽고 있음
- 2014년에 중국 및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복귀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인력분야 어려움(인건비, 구인난 등)’, ‘현지 내수시장 진출 목적’, ‘한국의 전반적인 고비용’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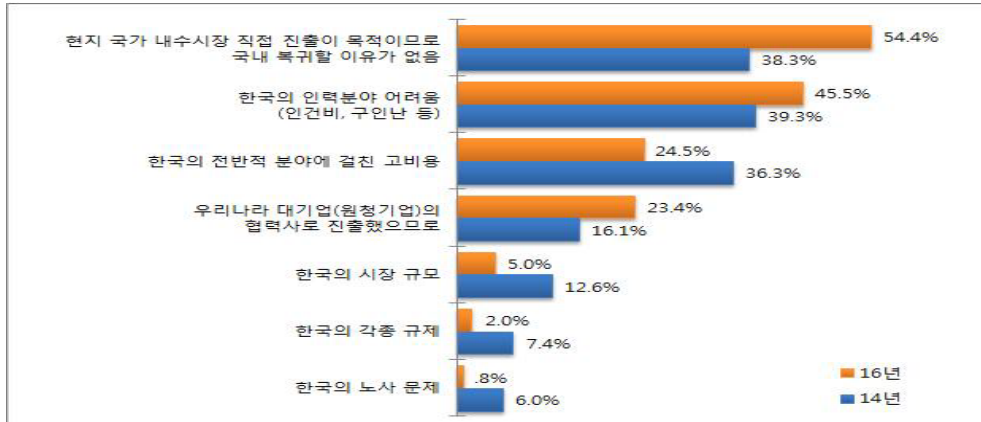
[그림 6] 국내복귀 의향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자료: 포커스 컴퍼니, 『2014년 중국 및 동남아 진출 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용역보고서, 2014, p.55.

- 2016년 조사에서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 목적’, ‘인력분야 어려움(인건비, 구인난 등)’, ‘한국의 전반적인 고비용’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인력문제가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음

[그림 7] 국내복귀에 부정적인 이유(복수 응답)



자료: 이선인·김선웅, 『2016년 중국 및 동남아 진출 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용역보고서, 2016, p.96.

나. 개선방안

(1) 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자동 생산망 구축

- 높은 인건비와 원하는 분야의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전문인력 구인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국내회귀’를 저해하는 요소로 공장노동자의 확보(40.3%), 고도 기술자·숙련기술자 확보(30.7%), 원재료비(14.3%), 법인세(3.7%), 비싼 전력 요금(2.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³⁸⁾
 - 독일의 경우도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로 제조업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등을 이유로 동유럽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게 됨
- 이러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로봇 산업 활성화 정책과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인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8) 사공목, 앞의 책, 2019, p.146.

-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Abenomics Growth Strategy)’의 핵심 정책인 ‘신로봇 전략(New Robot Strategy)’을 통해 전 세계의 로봇 이노베이션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2019년 로봇 관련 예산을 3억 5100만 달러(약 4,180억 원)로 늘리는 등 로봇산업 발전에 관심을 쏟고 있음³⁹⁾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클라우드 컴퓨팅, CPS 시스템 도입으로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효율화를 극대화했으며, 이는 고임금 국가인 독일에서도 경제적인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음
 - 아디다스는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 등을 도입한 스마트공장을 독일 내에 건설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대량 맞춤형(Mass Customization) 전략을 구사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생산 패러다임을 구축함
- 일본이나 독일처럼 인건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노동 집약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불리한 조건임
- 2018년도 제조업 종업원의 월평균 임금이 한국은 3,499불, 일본 2,685불, 독일 5,526불로 조사됨

[표 29] 한·일·독 제조업 종업원 월평균 임금 현황

(단위: 달러)

국가별	2015	2016	2017	2018
한국	3,154	3,114	3,236	3,499
일본	2,427	2,712	2,626	2,685
독일	4,854	4,939	5,142	5,526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earch/search.do>)

-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독일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의 산업현장 활용을 높

39) 국제로봇연맹(IFR), ‘세계 로봇 R&D 프로그램(World Robotics R&D Programs)’, 2020.

이고 스마트 기술 및 자동화를 통해 인력사용을 최소화 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⁴⁰⁾

- 인더스트리 4.0에 의한 기술 혁신은 노동 의존도를 낮춰 저임금 국가로 오프쇼어링하는 유인을 낮추고, 주문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생산 형태(customized production)로 변화하면서 고객 근처에 위치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함⁴¹⁾
- 로봇의 산업현장 배치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작업이 가능하고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제품 불량 감소와 투입인력 감소로 생산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가 2016년에 41,373대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13년도에 25,110대에서 2018년도에는 55,24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30] 한·일 산업용 로봇 설치 현황

국가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21,307	24,721	38,285	41,373	39,777	37,807
일본	25,110	29,297	35,023	38,586	45,647	55,240

자료: 日本機械工業連合会, 「2019年度ロボット産業・技術振興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20.

40) 물론 이러한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은 리쇼어링 기업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으나, 기업들이 사용하는 장비 및 인프라와 중간재 및 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인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41) Dachs, Bernhard, Steffen Kinkel, and Angela Jäger, 'Bringing it all back home? Backshoring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nd the Adoption of Industry 4.0 Technologies' 「MPRA Paper, No. 83167」, 2017, p.8.

(2) 개성공단 활용에 대한 중장기 검토

- 높은 인건비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리쇼어링 기업 지원대상을 개성공단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말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73.87달러였으며,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은 약 169.2달러로 이러한 임금 수준은 남한은 물론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표 31] 개성공단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보수 및 사회보험료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노동보수 (월 최저임금)	60.3 (50)	63.1 (52.5)	65.8 (55.1)	71.5 (57.9)	83.9 (60)	98.1 (63.8)	121.2 (67.0)	116.0 (67.0)	141.4 (70.3)	169.2 (73.9)
사회 보험료	7.8	7.9	8.3	8.8	9.8	11.2	12.8	12.5	14.1	18.4
소계	68.1	71.0	74.1	80.3	93.7	109.3	134.0	128.5	155.5	187.7

자료: 임강택·이강우,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통일연구원, 2017, p.97.

-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2018년 10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해외진출중소벤처기업 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 북한 진출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여건이 조성될 경우 37.8%’, ‘의향 있음 22.8%’로 긍정적 답변이 60.6%로 조사된 바 있음
- 개성공단에는 2016년은 2월 초 가동 전면 중단 전까지 125개 기업과 800여 명의 우리나라 근로자가 근무하였음

[표 32]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남·북 근로자 현황

시점	입주기업 수 (개소)	북측근로자 (명)	남측근로자 (명)
2009	117	42,561	935
2010	121	46,284	804
2011	123	49,866	776
2012	123	53,448	786
2013	123	52,329	757
2014	125	53,947	815
2015	125	54,988	82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earch/search.do>)

-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남·북한 모두의 공동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개성공단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 복귀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⁴²⁾
- 개성공단 생산액은 2010년도 3억 2,332만 달러, 2011년도 4억 185만 달러, 2012년도 4억 6,950만 달러, 2013년도 2억 2,378만 달러, 2014년도 4억 6,997만 달러, 2015년도 5억 6,330만 달러로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였음

[표 33]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단위: 만 달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액	32,332	40,185	46,950	22,378	46,997	56,330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www.index.go.kr>)

42) 김종규,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 점검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9, p.4.

5. 대기업 리쇼어링 촉진 방안

가. 문제점 및 필요성

- 미국의 경우 포드, 지엠, 월풀, 포드, 오티스 등이, 일본의 경우 샤프, 캐논, 파나소닉, 혼다 등 대기업이 자국으로 리쇼어링하면서 해당 지역의 고용 창출과 투자유치 등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리쇼어링 사례로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며 대부분 리쇼어링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임
 - 2019년에 현대모비스 및 5개 자동차 부품기업의 동반유턴이 이루어짐
- 대기업의 리쇼어링은 고용 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하청업체의 동반 유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쇼어링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나. 개선방안

(1) 세제지원 요건의 완화

- 우리 정부는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유인하기 위하여 입지·설비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법인세 및 관세 감면에 대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함

[표 34] 대기업 지원 확대 방안 내용

항목	개선 내용	비고																					
입지·설비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중소·중견 → 대기업)	보조금 고시 개정 ('19.4.)																					
세제감면	법인세, 관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 포함		조특법 개정 ('18.12.)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 colspan="2">대기업</th> <th colspan="2">중소·중견기업</th> </tr> <tr> <th></th> <th>청산양도</th> <th>축소</th> <th>청산양도</th> <th>축소</th> </tr> </thead> <tbody> <tr> <td>법인세</td> <td>○</td> <td>x→○</td> <td>○</td> <td>○</td> </tr> <tr> <td>관세</td> <td>x→○</td> <td>x→○</td> <td>○</td> <td>○</td> </tr> </tbody> </table>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	x→○	○	○	관세	x→○	x→○	○	○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	x→○	○	○																			
관세	x→○	x→○	○	○																			
법인세	○	x→○	○	○																			
관세	x→○	x→○	○	○																			

자료: 김종규, 앞의 자료, 2019, p.3.

- 그러나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으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25% 이상 축소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3단위) 기준으로 동일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4단위) 기준으로 동일할 것을 조세감면 지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조세감면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⁴³⁾

[표 35]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조세감면 지원요건 내용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근거규정	조세감면 지원요건	근거규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이상)할 것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⁴⁴⁾	해외사업장을 부분 축소(생산량 50%이상)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⁴⁵⁾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에 따른 소분류(3단위)상 동일할 것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3조(사업장의 신설·증설 등) ⁴⁶⁾	복귀 전·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에 따른 세분류(4단위) 기준으로 동일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⁴⁷⁾

43) 김종규, ‘유턴기업 성과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V」, 국회입법조사처, 2020, p.120.

- 실제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내로 리쇼어링한 현대모비스의 경우 해외 생산량 50% 감축 기준을 부합하지 못해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
- 따라서 대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요건 완화

- 현행법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해외사업장의 25% 이상을 감축해야 하지만 대기업은 해외 사업장 투자규모가 커서 25%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44)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 46)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3조(사업장의 신설·증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해야 한다.
-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휴대폰 공장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생산량 1.2억대의 25%인 3천만 대를 축소해야 함⁴⁸⁾
- 따라서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감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요건을 현재 25%에서 15%로, 대구광역시는 대기업의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1%만 축소하여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함

6. 세제감면 기간확대

가. 문제점 및 필요성

-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법인세 및 관세에 대한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감면기간이 짧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있음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입주할 것
- ▶ 창업하거나 신·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 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것
- ▶ 해외사업장을 부분 축소(생산량 50% 이상)하거나 유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할 것
- ▶ 복귀 전·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할 것

- 현행 정책에서는 신·증설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법

48)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2019, p.15.

인세를 5년 동안은 100%를, 그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표 36]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지원기간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수도권	수도권 이외
청산·양도	5년간 100% + 2년간 50%	5년간 100% + 2년간 50%
축소·유지	3년간 100% + 2년간 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앞의 자료, 2020

- 그러나 사업초기에는 국내복귀로 인한 이전비용, 신규 공장 설립비용 등이 과다하여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고, 정작 사업이 궤도에 올라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이미 감면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감면비율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⁴⁹⁾
- 국내복귀기업의 법인세 감면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3억 6,500만 원, 2016 년도에 5억 7,100만 원, 2017년도에 2억 3,400만 원, 2018년도에 2억 8,400만 원으로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37]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법인세 감면	365	571	234	28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20.9.7.)

나. 개선방안

- 세제감면은 소득이 많이 발생할수록 감면 효과가 크지만 국내로 리쇼어링 한

49) 황수빈,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주요국 리쇼어링 지원 세제 연구」, 국세청, 2019. p.52.

기업이 신·증설을 완료하고, 기업 활동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는 소득 규모가 작아 지원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세제감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정상화되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7년(5년 100% + 2년 50%)의 감면기간을 일정기간(예시: 5년 100%+ 5년 50% 또는 7년 100%+ 3년 50%)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수도권 이외 지역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의견을 제시함(현행: 5년 100%+ 2년 50%→개정: 3년간 100% + 3년간 50% + 4년간 30%)

7. 그 밖의 개선사항

가. 업적주의 및 성과주의 지양

- 코로나19 사태 이후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실적 저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실적 위주의 업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자체 능력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⁵⁰⁾에 지원할 우려가 있으므로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⁵¹⁾

50)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경쟁력을 상실해 더는 생존이 어려운 기업으로 통상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수준에 이른 기업이 해당됨

나. 미래첨단 산업정책과 리쇼어링 지원정책과의 연계

- 정부가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미래 자동차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의 값싼 노동력보다 국내기업의 우수한 부품 기술력과 첨단 ICT 기술이 중요하게 되었음
- 이는 현대모비스 같은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51) 문종철,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산업연구원, 2020.

V. 결론

- 이 보고서는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체제 확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스템의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내용과 실적 등을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 정책은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입지 및 설비 보조금지원, 세제지원, 인력 고용지원, 보증·보험지원, 금융지원, 스마트공장 및 R&D 지원 등이 있음
- 이에 비해 해외 주요국 중 법률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고⁵²⁾ 서울인하 등 전반적인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고 있음
 -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미국의 경우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제고와 제조업 강화법안 마련 등을, 일본은 제조업 입지제한 정책 철폐 등 규제철폐 및 투자지원을, 대만은 세제·토지·자금·R&D·외국인 노동자 고용 우대 등을,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을 활용한 첨단 제조기술 혁신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리쇼어링 기업 적용 확대문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미흡,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높은 인건비 등 인력문제, 대기업의 리쇼어링 촉진방안

52) 미국은 '14년 리쇼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법률안(Bring jobs home act)을 의회에 상정(민주당)시켰으나 부결됨

미비, 세제감면 기간의 실효성 부족 등임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리쇼어링 기업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내복귀기업’ 요건으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정한 규정을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경영상황, 국내복귀 의향, 선호 지원정책 등의 실태조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정례화하고, 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동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내복귀기업지원 대상 업종을 사행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산업 이외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넷째, 인력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도 리쇼어링 저해요인으로 꼽고 있는 바, 일본의 로봇산업,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같은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인력사용의 최소화와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높은 인건비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리쇼어링 기업 지원대상을 개성공단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기업의 리쇼어링 촉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복귀선정 요건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기업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섯째, 세제감면 기간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세제감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업 활동이 정상화되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7년의 감면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기타 개선사항으로 실적 위주의 업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며,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만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기반 조성,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 및 규제 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강수연·문제철, 「제4차 산업혁명과 광주전남지역으로의 리쇼어링」, 『전남광주 이슈경제』 NO.2018-1, 2018.
- 국제로봇연맹(IFR), 「세계 로봇 R&D 프로그램(World Robotics R&D Programs)」, 2020.
- 김계환·박상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의 변화』, 산업연구원, 2017.
- 김승호, 「Uncontact의 일본, 그 속에 나타날 시장 기회는」, 코트라 도쿄무역관, 2020.
- 김종규,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 점검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9.
- 김종규, 「유턴기업 성과 미흡에 따른 대책 마련」,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V』, 국회입법조사처, 2020.
- 문종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현황과 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능성」, 산업연구원, 2017.
- 문종철,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산업연구원, 2020.
- 박병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 박성훈 외,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대외경제연구원, 2017.
- 박소영, 「인더스트리 4.0, 독일 자국 제조업의 귀환을 알린다」,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2019.
- 백외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요인 사례연구 -부산지역 신발제조업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사공목,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9.

- 성기주, 「북미지역 유통과 제조업의 변화, 우리 기업이 주목할 기회는」, 코트라 뉴욕 무역관, 2020.
- 심혜정·강내영,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과 각국의 대응현황」,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2018.
- 이선인·김선웅, 『2016년 중국 및 동남아 진출 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용역보고서, 2016.
- 이수영 외,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이연경, 「미국의 리쇼어링 (Reshoring) 추진 동향 분석」, 「계간 해양수산」 3(2), 2013.
- 임강택·이강우,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통일연구원, 2017.
- 임민경·여지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윤별아,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외정책대응 및 감사시사점」, 감사연구원, 2019.
- 전정희, 「U턴 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정희 국회의원실, 2013.
- 주타이베이 대표부, 「리쇼어링 등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당지 영향 관련」, 2019.
-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해외진출중소벤처기업 동향 분석보고서』, 2018.
- 최혜린, 「주요국 리쇼어링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Research Brief』,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 포커스 컴퍼니, 『2014년 중국 및 동남아 진출 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용역보고서, 2014.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2019.

한국무역협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KITA 통상리포트』
VOL.06, 2020.

황수빈,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주요국 리쇼어링 지원 세계 연구」, 국세청, 2019.

[정부 자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 정부 보도자료, 2018.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정부 보도자료, 2020.

관계부처 합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보도자료, 2020.

무역전략조정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 정부 보도자료, 2020.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복귀기업지원 종합가이드』, 20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20.9.7.) <<https://www.kotra.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검색일: 2020.9.7.), <<http://www.law.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최종검색일: 2020.9.7.), <<http://kosis.kr/search/search.do>>

통계청,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지표)”(최종검색일: 2020.9.7.), <<http://www.index.go.kr/>>

[외국 자료]

日本機械工業連合会, 「2019年度 ロボット産業・技術振興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2020.

經濟産業省, 「地域未來投資促進政策について」, 2020.

經濟産業省等, 「ものづくり白書」2018年版, 2018.

Dachs, Bernhard, Steffen Kinkel, and Angela Jäger, ‘Bringing it all back home? Backshoring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nd the Adoption of Industry 4.0 Technologies’ 「MPRA Paper, No. 83167」, 2017.

Reshoring Initiative, “2018 Reshoring Initiative Data Report”, 2019.

[부록 1] 국내복귀기업의 지역별 세부 현황

(단위: 개)

No	업종	진출국가	복귀지역	선정시기
1	주얼리	중국	전북	'14.03
2	주얼리	중국	전북	'14.03
3	주얼리	중국	전북	'14.03
4	신발	중국	부산	'14.03
5	자동차	중국	광주	'14.03
6	금속	중국	부산	'14.03
7	섬유	중국	전북	'14.03
8	전자	중국	충남	'14.03
9	섬유	중국	경북	'14.03
10	신발	중국	부산	'14.06
11	전자	중국	경북	'14.09
12	기계	중국	세종	'14.09
13	기계	중국	세종	'14.09
14	주얼리	중국	전북	'14.10
15	주얼리	중국	전북	'14.10
16	주얼리	중국	전북	'14.10
17	주얼리	중국	전북	'14.10
18	금속	중국	충남	'14.10
19	기타	중국	경기	'14.10
20	신발	중국	부산	'14.12
21	전자	중국	경기	'15.07
22	전자	방글라	경기	'15.09
23	신발	중국	부산	'15.12
24	기계	중국	부산	'16.02

No	업종	진출국가	복귀지역	선정시기
25	금속	베트남	경기	'16.03
26	주얼리	중국	전북	'16.03
27	섬유	베트남	전북	'16.04
28	기계	중국	부산	'16.05
29	기계	중국	경북	'16.07
30	신발	중국	부산	'16.07
31	전자	중국	경기	'16.08
32	금속	중국	경기	'16.09
33	전자	중국	세종	'16.10
34	화학	중국	경북	'16.10
35	전자	중국	전북	'16.10
36	전자	중국	광주	'17.05
37	기타	중국	경기	'17.06
38	기타	중국	충북	'17.07
39	신발	베트남	부산	'17.11
40	전자	중국	충남	'18.01
41	자동차	중국	대구	'18.03
42	기타	중국	경남	'18.04
43	기타/대연	중국	충남	'18.05
44	주얼리	중국	인천	'18.06
45	화학	중국	경남	'18.07
46	전자	중국	경기	'18.08
47	기타	중국	경기	'18.10
48	주얼리	중국	전북	'18.11
49	전자	중국	전북	'19.02
50	자동차	중국	경북	'19.02
51	기타	중국	부산	'19.03
52	자동차	중국	인천	'19.03

No	업종	진출국가	복귀지역	선정시기
53	금속	중국	부산	'19.03
54	기타	중국	세종	'19.05
55	화학	중국	경북	'19.05
56	자동차	중국	충남	'19.05
57	기계	중국	충남	'19.06
58	자동차	중국	충남	'19.08
59	자동차	중국	경북	'19.08
60	화학	중국	울산	'19.09
61	자동차	중국	울산	'19.09
62	섬유	중국	대구	'19.10
63	주얼리	중국	전북	'19.11
64	전자	베트남	충북	'19.12
65	자동차	중국	경북	'20.01
66	화학	중국	전북	'20.01
67	주얼리	중국	전북	'20.01
68	신발	베트남	부산	'20.03
69	자동차	중국	경남	'20.04
70	금속	필리핀	경북	'20.05
71	주얼리	중국	전북	'20.05
72	전자	중국	경북	'20.06
73	전자	필리핀	인천	'20.06
74	전자	중국	경기	'20.06
75	기계	중국	전북	'20.07
76	금속	중국	충남	'20.07
77	전자	중국	인천	'20.07
78	화학	베트남	강원	'20.08
79	금속	인도네시아	경남	'20.08
80	자동차	중국	경북	'20.08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제출(2020.9.7.)

입법·정책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01호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2018.03.13.	허석재
제002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2018.05.31.	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제003호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2018.06.22.	문은희
제00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8.06.28.	류영아
제005호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2018.07.11.	김종갑
제006호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2018.07.26.	조서연
제007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8.08.08.	조 주은 최진응
제008호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2018.09.21.	허민숙
제009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15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제010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2018.11.29	김유향 김나정
제011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1.29	신동윤
제012호	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2.07.	권성훈
제013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개선 과제	2018.12.10.	김태엽
제014호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2018.12.11.	이만우
제015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2018.12.13.	박선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16호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18.12.13.	정준화
제017호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2018.12.14.	김현정
제018호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2018.12.14.	김진수
제019호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12.17.	허민숙
제020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2018.12.19.	김도희
제021호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2018.12.20.	정민정
제022호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인증책임 전환을 중심으로-	2018.12.24.	박재영
제023호	시진핑 집권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2018.12.27.	김예경
제024호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27.	백상준 김예경
제025호	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31.	이승현
제026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01.18.	김창호
제027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9.09.24.	류영아
제028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9.10.31.	박선권
제029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9.11.01.	최미경 최정민
제030호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2019.11.15.	장은덕
제03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2019.12.10	김진수
제032호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9.12.16	박재영
제033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2019. 12. 19.	김은진
제034호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9. 12. 23.	김유향 유지연 김나정
제035호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2019. 12. 24.	김영석 박준환 김대명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36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2019. 12. 26.	이혜경
제037호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2019. 12. 26.	구세주
제038호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9. 12. 27.	백상준
제039호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2019. 12. 27.	박명희
제040호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9. 12. 31.	김도희
제041호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9. 12. 31.	황현영
제042호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19. 12. 31.	문은희
제043호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2019. 12. 31.	강지원 조영은
제044호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0. 05. 22.	허민숙
제045호	국회 안전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0. 05. 30.	전진영
제046호	ILO 핵심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	2020. 06. 24.	신동윤
제047호	철도 유희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2020. 06. 30.	구세주
제048호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2020. 06. 30.	김예성 하혜영
제049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0. 07. 10.	김창호
제050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07.	김예성
제051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2020. 08. 13.	박선권
제052호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28.	김예경
제053호	대통령제 정부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와 시사점	2020. 09. 01.	허석재
제054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2020. 09. 01.	김종갑 허석재
제055호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07.	정준화
제056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18.	박혜림
제057호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2020. 09. 21.	정민정
제058호	상속세 미납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2020. 10. 07.	장영환

입법 · 정책보고서 Vol. 제59호

발 간 일 2020년 10월 8일
발 행 김하중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6788 · 4590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 · 2273 · 5090)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586-5668
발간등록번호 31-9735025-001606-14

©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입법·정책보고서

주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NARS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 6788. 4510(代) 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25-001606-14
ISSN 2586-5668

